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21. 12. 31.>

보내는 사람:

받는 사람: 귀하

주소:

( )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(개별실적요율)

문서번호	
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	
	상호・법인명	대표자	
	소재지		

산재보험 성립일		산재보험 사업종류	
보험수지율		산재보험료율	
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			

귀 사업장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"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"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( )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
※ 유의사항

1. "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"이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의2의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.
2.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은 별도입니다.

년 월 일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	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	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	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			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)			
우 /주소		/홈페이지주소	
전화( ) /팩스( )	/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	/공개구분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